

<제1세션>

공인 가족에 대한 실명보도, 정당한가?

■ 진 행 : 구율화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변호사)

■ 패 널 : 김가람, 박태훈, 임유진, 홍진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문중(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5중재부 조사관, 변호사)

<제1세션> 공인 가족에 대한 실명보도, 정당한가?

▶ 토론개요

제1세션 토론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제 처리한 2012서울조정350·351 사건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본 사례는 이준석(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씨의 부친이자 H사 법정관리인인 신청인 이OO씨가 헤럴드경제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조정대상은 헤럴드경제 2012년 3월 16일자 19면 『이준석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 제목의 기사이다.

해당 기사는 신청인이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주가조작 및 회사 재산의 유용과 감자를 상습적으로 반복해 수백억 원을 포탈하는 등 무고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소액주주 대표 A의 주장과 신청인의 실명과 학력·경력 등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아들인 이준석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고소·고발된 사실조차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비난하는 일방의 주장을 확인 없이 보도해 명예가 훼손당했음을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의 아들은 이번 사건과 무관함에도 기사 제목 등에서 신청인이 이준석의 “부친”임을 강조하고 이준석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아들의 명예도 크게 훼손당했음을 주장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심리를 통해 고소·고발 내용은 일방의 주장일 수 있는데 수사기관의 결정이 나기 전 이를 상세히 보도한 것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양 당사자는 정정보도 및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본 토론회의 제1세션에서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공인의 범위, 혐의보도와 정정보도, 공인의 초상권 등에 대한 학생 패널들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쟁 점 1 : 공인의 범위

- 공인의 가족도 공인으로 간주해 실명보도가 가능한가 -

박태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은 우리나라 판례가 사인인 경우에는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여 사인인 경우에는 범죄혐의 보도 시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대로 공인인 경우에는 신원 공개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그런데 공인이나 공적 인물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공인의 범주를 넓게 보아서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공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인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성' 개념을 적용해 공인을 공공성이 인정되는 인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

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즉 공공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혐의를 보도할 때 신원을 공개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려면 공공성의 범위를 위 판단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공공성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공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사안에서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준석씨의 아버지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정치인과 같은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인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 외에는 공인으로 판단한 적이 거의 없다. 이처럼 공인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기에 단지 공인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범죄혐의 보도 시 그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범죄혐의 자체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성을 갖기 어렵다. 공인에 대한 많은 관심이고 가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내용의 보도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도내용은 법원에 의해 범죄성립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고소·고발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이러한 기사로 인해 일반 독자들은 당사자가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공직자와 같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하여 신원 공개를 감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그 가족에게까지 적용한다면 그들에게 과도한 인격권 침해의 수인을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인의 가족에 대한 범죄혐의 보도 시 그들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가 더 커서 위법하다고 본다.

그 외에 법정관리인의 직책으로 인해 신청인을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 법정관리인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으로서 기업회생을 돕기 위해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익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대중이 관심을 갖는 일도 아니고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측면도 적기 때문에 법정관리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 역시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에서도 “의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에서 원고는 평범한 정신과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는 점, 그 범죄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도 일반 국민들이 피고들이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저지른 범죄를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보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의사라는 직업은 어느 직업보다도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평범한 의사의 경우에는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기에 공인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만약 신청인이 이준석씨의 아버지가 아닌 단순한 법정관리인이었다면, 기사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사 제목에서도 이준석씨의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볼 때, 법정관리인의 공공성을 이유로 이 사건을 기사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판례에서는 공공성이라는 요건을 설명할 때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일 것과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법정관리인의 범죄혐의를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인의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법정관리인이라는 직책의 공익적인 측면이 있을지라도, 그것만을 근거로 신청인을 공인이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임유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이 사건 신청인 이OO의 지위를 공인이나 공적 인물로 보지 않고 사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쟁점은 공인의 가족을 공인과 완전히 분리된 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공인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 ‘공인’이라는 개념 역시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유연한 개념이다.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의 가족을 공인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 역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을 공인으로 보기 위한 기준으로는 '공적 연관성'을 들 수 있다. 즉 공인의 가족에 관한 사항이 공인의 사회적 평가와 연결될 정도의 사건·사고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인정되므로, 사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 아니라 '공적 연관성'을 갖는 공적 영역이 되는 것이다. 만약 신청인의 회사자금 포탈 및 부정행위 의혹으로 인한 고소 내용이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순히 신청인뿐 아니라, 그 자녀인 이준석 씨의 사회적 평가 역시 동반되는 공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적 연관성이 생긴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더 이상 사인이 아닌 확장된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법정관리인'이라는 지위로 인하여 그는 여전히 공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법정관리인'이란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를 위해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을 일컫기에, 좁은 의미에서 공무원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국가경제에 기한다는 임무의 공적 성격 및 사법기관이 임명한 담당자라는 의미에서 사회 일반인들에게 '법정관리인'은 공적 인물로 쉽게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지위를 공적 인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역시,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밀접한 규제를 받고 있는 회사나 상장된 주식회사 등의 법정관리인의 경우 공인 취급을 받는다.

그렇다면 공인의 지위를 갖는 신청인에 대한 사건 보도는 사인의 경우에 통용되는 익명보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 실명보도가 널리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실명을 사용하여 보도한 언론사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김가람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피신청인 측에서는 신청인을 공인이라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신청인이 공인인 이준석씨의 부친이라는 점, 신청인이 법정관리인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떠나 정치인의 가족이 공인인지 여부, 법정관리인이 공인인지 여부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설사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업이

나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는 그 사인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례에서는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인인지 여부는 기사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에 그치며, 결국 공익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판례가 그러하듯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위해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고, 공인인 법정관리인의 부실 관리는 언론이 감시하고 비판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기사를 살펴보면 'H사의 부실 경영 의혹' 그 자체 보다는 기사의 대부분을 신청인에게 할애하고 있다. 심지어 기사 제목이 "이준석 부친이 고소당한 까닭"이고, 기사에는 이준석씨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신청인과 이준석씨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취재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신청인이 이준석씨의 부친이 아닌 평범한 법정관리인이었다면 실명이 게재되었을지, 즉, 이 사건이 판례상으로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을 깨고 실명보도를 할 만한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이 든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 이해관계자 간에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도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실명으로 보도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신청인이 이준석씨의 부친이기 때문일 것이다.

설령 이 사안이 공익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성명을 이니셜 등으로 대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포털사이트에 '정치인 A'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봐도 "유력 정치인 A 의원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현 의원에게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A 의원을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헤럴드경제, "1라운드는 3억원 행방 밝히기...2라운드는 거물급 소환?", 2012. 8. 7)" 등의 수많은 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신청인은 이니셜 등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신청인과 이준석씨의 실명을 사용한 것은 헌법상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사료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역시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이나 두문자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지기 때문에, 실명보도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전자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실명이 보도된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커지므로,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더 높아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실명보도하기 위해 기울인 주의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신청인은 고소인들 중 한 명인 최OO과의 한 차례의 전화통화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또한 H사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신청인이 법정관리인으로 부임한 날보다 이전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았다. 게다가 기사에서 인용하였다는 최OO은 신청인에 대해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기사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즉 이 사안에서의 피신청인은 위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갖추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홍진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언론보도의 대상이 사인인 경우에는 익명보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유OO의 이혼 보도 사건에서 대법원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공적 지위에 있지 않고(1998. 7. 14. 선고 96다17257)”라고 하였고 정신과 의사의 마약류 취급을 보도한 사건에서는 “평범한 정신과 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고(2007. 7. 12. 선고 2006다65620)”라고 설시하였다. 대법원이 이들 사건에서 실명보도가 위법하다고 한 것은 이들이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OO은 공인에 해당하므로 이니셜 처리 등의 익명보도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전적 의미에서 공인이란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며, 미국에서 도입된 개념인 공인(public person)이란 ‘공적

인 결정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전적 의미보다 더 광범위하다. 어느 쪽의 견해를 취하든 간에 신청인을 공인으로 판단하여 실명보도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신청인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청인은 법정관리인으로 공인의 지위에 있다. 법정관리인이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법정관리기업의 최고경영자로, 대한민국 법원이 공인한 사람이므로 공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H사는 결코 작은 기업이 아니고 수천 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이러한 기업의 법정관리인이라면 일반인보다 언론 노출을 감수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H사는 시가총액이 천억 원에 육박했었고 4천여 명의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있다. 또한 H사 소액주주모임이 결성되어 있다는 것도 H사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갖는 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이 사건은 범죄혐의 보도로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 대법원 판례도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범인에 관한 정보 역시 보도에 필요하며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셋째, 이 기사가 보도된 당시의 이준석씨는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가정 환경 등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은 법정관리인 측면에서 공공의 관심을 수인해야 할 '공인'의 지위에 있으며, 이준석씨의 부친이라는 점에서도 '준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 점 2 : 혐의보도와 정정보도

- 혐의나 의혹제기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가능성 검토 -

임유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사건 중 상당수가 '범죄보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보도 대상이 된 개인이 공인에 해당될 때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사인의 경우 범죄보도에 있어 '익명보도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공인에 해당될 경우 '실명보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명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여지가 커지는데 이 사건 역시 그러하다.

한편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 보도는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지 알려 준다.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까지 강구한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범죄 사건보도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범인에 관한 정보 역시 범죄 사실과 함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따라서 언론사 측에서는 보도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과 보도로 인한 공공성을 이익형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사건 보도의 공공성은 특히 피신청인이 경제전문신문으로서 소액주주들의 입장 전달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보도의 큰 동기를 가진다.

주식회사 H사는 한 때 녹색주로 각광을 받던 자본금 270억원의 유망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부도가 나 상장폐지가 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전 대표이사 이OO씨는 고발이 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6월 2일 법정관리인들은 회생계획의 일환으로서 300대 1의 감

자산을 제시하였고 소액주주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감자안이 의미하는 바는 270억원의 자본금 회사가 7천만원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OO씨를 포함한 법정관리인들이 회사자금을 포탈하고 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인위적으로 자산을 감액한 후 향후 회사를 인수할 제3자에 대한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H사 소액주주 최씨의 인터넷 게시판 글 中>

따라서 소액주주 대표 최OO은 본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인식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게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와의 통화접촉을 통해 종국적으로 기사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파산회생절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매체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은 이 사건 보도의 '공공성'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신청인 측에서는 언론사가 보도 전에 고소·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 큰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3자의 형사고발로 시작된 수사 등 외적 경과만 객관적으로 보도한다면 보도를 하는 측에서 고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언론사 기사가 고발 자체를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여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고발내용이 진실인지 쉽사리 의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신청인의 반론은 인정하기 어렵다.

김가람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피신청인은 고소인과의 통화를 인용하여 의혹 제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에서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판시한 다른 판례(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에서는 '보도내용의 의미는 해당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보도내용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보도내용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제3자의 발언내용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비록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성질에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기사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서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표현을 하였거나 전후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표현한 경우에도 그러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함께 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이 기사가 인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여도 신문사를 통해 공표된 이상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인용의 대상인 최OO이 직접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마땅히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홍진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신청인 측에서는 신청인의 혐의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취재가 선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H사의 법정관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기사의 초점은 신청인에게 '범죄 의혹이 있다, 혐의가 제기되었다'라는 것에 맞추

어져 있다. 따라서 기사의 신속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검찰에서 종국처분이 있거나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이처럼 신속하게 보도하는 기사였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오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적 주장과 고소인의 주장이 기사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즉 조정대상 기사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단순히 전달하고 있을 뿐,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최OO이 언론사와 전화통화에서 밝힌 내용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따옴표를 사용해 인용했을 뿐, 보도 내용이 반드시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다. 신청인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신청서면에서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아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시인한 바 있다. 과연 이 보도가 진실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인 측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만일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 등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때 가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현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태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피신청인 측은 이 사건 보도에서 최OO의 인터뷰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이어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는 해당 기사의 일부분이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상 실질적으로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최OO의 인터뷰 내용이 문제된 것은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주장이 신청인에 대한 고소, 고발의 이유로서 범죄사실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고소 등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소 등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소인에게 범죄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 그러한 주장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범죄의 성립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기사화할 때는 고소인의 주장이나 그 이유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 측의 반박 내용도 보도하여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측은 고소사실과 고소인의 인터뷰만 게재했을 뿐, 신청인 측 입장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최OO의 인터뷰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착각하여 신청인이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편견을 갖고 볼 수 있기에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후 최OO이 이 사건 기사가 문제되자 자신은 인터뷰 당시 기사 내용처럼 말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므로 그 사실이 진실하다고도 볼 수 없기에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향후 추후보도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추후보도청구를 위해 현실적으로 형사절차가 종결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에 신청인은 그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청인은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일반 독자들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신청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에 비해 신청인의 인격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기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혐의에 대한 공정성을 잃은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정보도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쟁 점 3 : 공인의 초상권

- 공인 가족의 범죄혐의 보도 시 해당 공인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가 -

박태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신청인이 기사에서 특정되었는지 여부이다. 특정이라는 것은 일반 독자를 기준으로 기사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이면 되는데, 이 사건에서 이준석씨는 기사의 주요 보도대상은 아니지만 기사의 제목 등을 통해 이준석씨의 아버지에 대한 기사임을 나타내고 있고, 사진까지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준석씨가 특정된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 기사의 표현이 이준석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한다. 여기서 명예는 외적 명예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준석씨는 정치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청렴성과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는 이준석씨 아버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로서 이준석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반 독자들은 이준석씨의 아버지가 마치 범죄혐의가 많은 것처럼 인식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이준석씨의 정치인으로서의 평가 역시 안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가족의 범죄사실에 해당 정치인이 관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쉽고, 비록 당사자가 이에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정치인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가족의 범죄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이준석씨 아버지에 대한 보도이지만, 그 보도내용이 범죄혐의에 대한 것이고 또한 편파적인 보도로 인하여 범죄혐의가 충분히 있는 것처럼 간주되므로 정치인인 이준석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세 번째로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 내용은 편파적인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보도했는지 의문이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청인의 실명을 게재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준석씨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범죄혐의자인 아버지의 신원을 밝힘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이준석씨 아버지임을 밝힌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앞서 공인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청인은 공인이 아니고, 그의 신원을 밝히는 것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공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재로서는 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취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나아가 이 기사는 이준석씨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치인 이준석씨는 공적 인물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스스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의 관심을 끄는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혐의에 대한 편파적 보도로서 이준석씨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크기에, 이준석씨의 초상을 공표함으로써 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초상권도 인격권의 한 종류로서 공적 인물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공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성이 부족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김가람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비록 이준석씨는 이 사건의 신청인이 아니지만 그가 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내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검토해 보

고자 한다. 이준석씨는 당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공인인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는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실시하여 공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적 취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선언하였다. 대법원(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역시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다른 판례(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에서도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그리고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제기라는 유형에 있어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만, 그러한 보도가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는 결국 구체적인 기본권을 이익형량의 방법을 통해 조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바, 과연 공인에 대한 보도의 범위 및 공직자의 인격권 보장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할 것이다.

기사를 보면 제목에서부터 이준석씨가 신청인과 부자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친을 사기, 횡령 등을 저지른 범죄자로 묘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준석씨는 각종 포털기사의 댓글과 트위터 등에서 수많은 비난을 받았고, 정치인으로서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준석씨가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가사 정정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정정보도의 파급력은 허위 기사로 인한 파급력에 미치지 못한다. 허위 기사로 인해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유무형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피신청인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준석씨를 굳이 강조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준석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준석씨는 명예훼손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준석씨는 초상권 침해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고,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이 포함된다. 이 사안의 경우 이준석씨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석씨 본인이 아닌 부친의 범죄혐의라는 점, 게다가 그 혐의조차 오보였다는 점,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의 초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공표됨으로써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는 데 기본적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비록 이준석씨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안은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홍진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먼저 이준석씨에 대한 명예훼손 성부를 살펴본다. 신청인 측에서는 본건 기사로 인해 이준석씨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대중들도 고소, 고발된 사람은 이준석씨가 아니라 그 아버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준석씨를 그토록 비난하였을까. 그것은 일반인의 관념으로도 아버지가 수백억 원을 포탈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득은 경제생활의 공동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준석씨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 본인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가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문제를 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이다. 정치인의 가족구성원이 불법행

위로 회사 재산 수백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면 그 정치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정당한 알 권리가 있고 이준석씨는 공인으로서 이를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정치인 주변 인물의 비리 혐의에 대한 언론 보도에 정치인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이는 오히려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는데(1999. 6. 24. 97헌마265 결정),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며 공적 인물과 사인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준석씨는 공적 인물로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본 사안은 범죄혐의관련 기사이자 정치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공공성을 갖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준석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준석씨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인의 가족구성원이 회사 재산의 유용으로 수백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 정치인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관련 기사에 당사자의 사진을 게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이준석씨의 사생활을 담은 사적인 사진도 아니고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도 아니다. 초상권은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적인 것과 재산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청인 측도 여기서 초상권의 재산적인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사생활 관련 인격권의 문제만이 있을 것이다. 한 때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경우는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사건 기사에서 게재한 사진은 공적인 자리에서 촬영되어 이미 여타 매체에서 공개 및 활용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준석씨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씨는 젊은 나이에 여당의 비대위원이 되어 당시에 언론매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정치인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글에서 '이준석'이라는 키워드로 이미지를 검색하면 무려 이십만 육천장의 관련 사진이 검색된다. 이처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이준석씨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해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임유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기사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었는가, 기사에 사용된 표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혹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본 기사의 대상은 명백히 신청인 이OO으로 이준석씨는 신청인을 특정하기 위한 언급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부자간이라는 사실적 표현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다. 즉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가사 보도의 공공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명예훼손 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청인 측에서 이준석씨의 피해 사항으로 트위터에서 비난글이 쇄도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만, 판례는 공적인 인물 내지 스스로 공적인 비판대에 올라서서 명예훼손의 위험을 감수한 자의 경우 해당 표현이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TV 프로그램 출연 및 트위터 등 SNS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준석씨는 스스로 공적인 비판대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공적 인물이며, 따라서 이 보도 이후로 일반인들의 비난 등이 쏟아진다고 해서 바로 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씨의 초상이 공포된 점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 성부를 살펴본다. 현재의 언론관계 법률은 개인의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초상권은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 내용으로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절권),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이다.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표거절권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공적 또는 시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인물의 초상권은 개인의 초상이 본인의 승낙 없이 전파, 열람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본 사건의 보도 내용이 공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초상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은 더욱 어렵다. 최근 신세계 정용진과 그 약혼녀 한OO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침해금지의 소에서 법원은 “상견례 회동과 같이 사적 영역에 있는 사진을 제외하고 이미 얼굴이 알려지고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OO의 다른 사진의 게재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본 사안에 참고할 만한 판례의 입장이라 생각된다.

보 론 : 쟁점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검토

김 문 중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5중재부 조사관, 변호사)

앞서 토론자들께서 각 쟁점에 대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 실무상 경험과 개인적 의견을 토대로 보완해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쟁점에서 논의한 공인의 개념과 관련해, 공적인 인물이란 그 업적, 명성, 생활양식에 의하여 또는 일반 대중이 그의 인격, 행동 등에 관한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공적인 명사가 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아직까지 공인과 사인의 구별 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례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TV 뉴스 앵커를 지낸 방송사 보도국 차장이 공인인지를 판단하면서, 판례는 공적 인물 못지않게 그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실시하면서 공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을 본 사안에 적용해 본다면, 단지 이준석씨 아버지라는 지위 또는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라는 측면에서 신청인을 공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정관리인이라는 지위로서는 공인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실명 공개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쟁점에서는 혐의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는 정정보도청구를 하려면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이를 언론이 공표한 이상, 언론의 사실적 주장으로 보고 있다. 본 사안에서 비록 언론사가 단순한 의혹제기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정정보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특히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신청인이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언론중재법에서는 추후보도청구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 또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

우 신청인은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에서 이준석씨는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이라는 신분이므로 공인으로 인정되기 충분하다. 또한 아버지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보도로 인해 자신도 비난받을 수는 있겠지만, 연좌제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보도로 인해 이준석씨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이준석씨의 초상권 침해 성부를 보면, 판례는 공인의 경우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수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한계는 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 시사주간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을 김정일의 사진과 같이 게재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 또는 용공, 친북 인사'라는 등의 표현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전 대통령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사실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인의 사진을 공표한 경우까지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인의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본 사안에서 만약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가정한다면, 비록 이준석씨의 사진이 공개석상에서 촬영된 것이고 포털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준석씨의 초상권에 대한 침해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